

「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」재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96
----------	-----

2024. 9. 6.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8. 23. 강남구청장(건강관리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(2024. 9. 6.)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보건소장 이종철)

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(2023.1.1.~2024.12.31)의 만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목적

- 강남구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치매예방, 조기진단 및 치료와 재활, 보건·복지 자원의 연계 등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매유병률 감소 및 중증화 지연,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

나. 사업내용

-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,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,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,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, 치매환자쉼터 운영, 치매 의료비 지원 등

다. 위탁 근거¹⁾

- 「치매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라. 위탁 필요성

- 의료 및 복지 분야의 통합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치매관리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치매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

마. 위탁 시설

-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8길 27 (4-5층)
- 시설 현황

구분	면적	총별 용도
지상 4층	545.11㎡	치매안심센터 검진상담실(1), 인지검사실(1), 건강홀(1), 사무실(2), 강당(1), 상담실/서고(1), 가족카페(1), 화장실(2)
지상 5층	358.13㎡	인지건강센터 음악치료실(1), 미술치료실(1), 작업치료실(1), 직원휴게실(1), 샤워실(1), 화장실(2)
총 903.24㎡		

바. 운영 인력

총 직원수	비상근		상근						
	전문의 (센터장포함)	부센터장	간호사	사회 복지사	작업 치료사	음악 치료사	미술 치료사	운동 치료사	행정 요원
22	2	1	7	5	3	1	1	1	1

사. 민간위탁 기간

- 1)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
 「치매관리법」 제20조(위임과 위탁)
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운영의 위탁)
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2025년 1월 1일 ~ 2027년 12월 31일 (3년)

아. 수탁자 선정 방식

- 공개경쟁모집: 위탁기관선정 후 협약체결에 의한 민간위탁
- 수탁기관 자격범위: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사업 수행에 적합한 인적·물적 자원을 소유하고 강남구의 차별화 된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강남구 또는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
- 수탁기관 선정기준: 사업계획의 적정성, 사업수행능력, 예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

4. 참고 사항

○ 위탁경과 및 현황

연번	위탁기간	수탁기관	비고
1차	2010.1.1.~2012.12.31.	삼성서울병원	공개모집
2차	2013.1.1.~2014.12.31.	삼성서울병원	재 계약
3차	2015.1.1.~2017.12.31.	삼성서울병원	공개모집
4차	2018.1.1.~2019.12.31.	삼성서울병원	재 계약
5차	2020.1.1.~2022.12.31.	삼성서울병원	공개모집
6차	2023.1.1.~2024.12.31.	삼성서울병원	재 계약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주현)

가. 제출 개요

- 이 동의안은 <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>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재위탁하는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것임.

나. 검토 내용

- 위탁의 필요성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에 따르면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이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음2).
-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는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,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,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,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 등의 각 업무3)는 모두 법령에 정하여진 인력 기준에 따른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분야별 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수행하여야 하고, 의료 및 복지 분야의 통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볼 수 있음.
- 현재 운영 근거가 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만료 예정임.

○ 추진 경과

- <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>는 2010년 1월부터 강남구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에 위탁하여 공개모집 및 재계약 과정을 거쳐 운영

2)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[시행 2024. 7. 12.] [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70호]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3) 「치매관리법」 [시행 2024. 7. 3.] [법률 제19904호]

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
2.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
3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
4.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5.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
6.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
- 6의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
- 6의3.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
- 6의4.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7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을 계속 민간위탁 해왔음. 이 동의안을 통하여 내년초 7차 재위탁 운영 기관 공개모집을 추진하려는 것이며, 이번 민간위탁 예정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3년임.

- 해당 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△치매 고위험군(경도인지장애) 대상 신규프로그램 추진으로 만족도 제고, △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의 호응도 높음,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1.6% 이상 만족 등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100점 환산에서 94.25점을 획득하였음.⁴⁾
- 성과평가 지표의 각 항목별 점수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, △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점, △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, △다양한 분야의 전문치료사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.
- 특히, 다른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와 달리 <강남구 특화사업>이라는 주제로 △적극적 홍보(유튜브 채널 운영, 의학전문 콘텐츠 제작 및 확산), △유관기관 협업체계 확대(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 추가적으로 체결), △다양한 치매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음.
- 다만,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부분은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받는 치매인지선별검사(CIST) 신청이 급증하는 9~12월에는 검사 지연 등으로 대기자 민원이 늘어난다는 점이었고,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도로교통공단과의 소통 증진, 검진 인력 확대 등이 제시되었음. 해당 시기에는 업무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운전면허 갱신목적 치매인지선별검사(CIST) 전담창구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임.

○ 확인 사항

- 다만, 「치매관리법」 및 그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치매안심센터의 시설·인력

4)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, 2024. 8., <2024년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>

기준⁵⁾에 따른 전문인력 중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으로서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‘임상심리사’를 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지, 또는 전문인력 미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보임.

- 해당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 신설되었으므로 이후 체결된 5차 및 6차 계약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, 최근에 이루어진 2024년 8월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.

다. 종합 의견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체 구민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%가 넘고, 노인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높은 편임.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치매건강관리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 부진 관련 성과평가 지표 등에 대하여 함께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.

5) 「치매관리법」 [시행 2024. 7. 3.] [법률 제19904호]

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·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 [시행 2024. 7. 3.] [보건복지부령 제1020호]

제8조(치매안심센터의 시설·인력 기준)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시설·인력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.

[별표 2의 3] 치매안심센터의 시설·인력 기준(제8조 관련)

2. 인력 기준

간호사, 1급 사회복지사, 작업치료사,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.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「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」 재위탁 동의안

「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」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9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8. 23.

제출자 : 강남구청장

제출부서 : 건강관리과

1. 제안이유

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(2023.1.1.~2024.12.31)의 만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
- 「치매관리법」 제20조(위임과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○ 추진 필요성

- 의료 및 복지 분야의 통합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치매관리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치매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
-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-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사업
-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
- 치매환자쉼터(기억키움학교) 운영
- 치매 의료비 지원사업
-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구축 사업
-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
-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8길 27, 4~5층
- 규모 : 면적 903.24㎡

구분	면적(㎡)	내용	비고
4층	545.11	검진상담실(1), 인지검사실(1), 건강홀(1), 사무실(2), 강당(1), 상담실/서고(1), 가족카페(1), 화장실(2)	903.24㎡
5층	358.13	음악치료실(1), 미술치료실(1), 작업치료실(1), 직원휴게실(1), 샤워실(1), 화장실(2)	

○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공개경쟁모집 : 위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에 의한 민간위탁
- 수탁기관 자격 범위
 - 강남구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지를 갖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공고일 현재 강남구 또는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
- 수탁기관 선정기준
 - 사업 계획의 적정성, 사업 수행능력, 재정 부담능력, 예산운용의 효율성,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 검토
-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 의결로 선정
 - 구성기준
 - .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(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.)
 - 위 원
 - . 강남구의회 의원, 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, 관련 공무원 등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,590,100천원 (※2024년 민간위탁금 기준)
- 산출내역

(단위 : 원)

구	분	산출내역	예산액
	기본급	2024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 기준	756,627,770
채수당	정액급식비	20명*100,833*12월	24,200,000
	가족수당	19명*68,421원*12월 ※배우자 40천원, 첫째자녀 30천원, 둘째자녀 70천원, 그 외 부양가족 20천원	15,600,000
	특수근무수당	20명*55,420원*12월 ※부센터장 100천원, 팀장 70천원,	13,300,000

구 분		산출내역	예산액	
① 인건비		팀원 50천원		
		초과근무수당	20명*404,540원*12월	
		처우개선수당	20명*100,000원*12월	
		명절휴가비(기본급60%)	20명*1,670,052원*2회	
		퇴직충당금	20명*304,166원*12월	
	보 험 료		국민건강보험료	보수월액 3.545%
			국민연금보험료	보수월액 4.5%
			고용보험료	보수월액 1.15%~1.75%
			산재보험료	사업별 상이
			장기요양보험	국민건강보험료 12.95%
		소 계		1,162,394,000
② 운영비 ~ 경비		여비(국내/국외) 20명*38,333원*12월 ※ 관외 일비 25천원, 관내 일비 20천원	9,200,000	
		교육훈련비	20명*14,167원*12월	
		우편비	우편 50건*100원*30회	
		통신비	핸드폰, 인터넷 비용 1,800,000원*12월	
		소모품비	각종 사무, 청소용품 등 1,692,783*12월	
		수선유지비	미화, 소방, 보안용역비 등 6,309,200원*12월	
		차량유지비	렌탈비등 1,082,000원*12월	
		공공요금 및 제세	수도, 가스, 전기요금등 2,445,000원*12월	
		기타경비	제세공과금 등 4,865,300원*12월	
		소 계		231,081,400
③ 사업비		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관리 사업 등	196,624,600	
합계(A=①+②+③)			1,590,100,000	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치매관리법」 제20조(위임과 위탁)

제20조(위임과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운영의 위탁)

제5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(이하 "수탁기관"라 한다)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20.>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③ 삭제 <개정 2019.12.20.>
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9.12.20.>

○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

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나. 민간위탁심사 평가항목

심사부문		부문별 평가항목	항목배점	
기술 능력 평가	정량적 평가 (40점)	사업수행 (실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매관리사업 분야 실적(최근 3년간) - 치매관리사업관련 특수수행실적(최근 3년간 학회, 세미나, 교육주관 발표) - 주요사업실적(해당과 진료실적 등) 	20점
		기술인력 보유상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인력 수준(센터장 이력 포함) - 의료기관 현황(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) 	20점
	정성적 평가 (60점)	제안서 내용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정책 이해 및 사업추진전략 - 사업의 필요성 및 우리구 현황 기술 적절성 - 사업수행계획의 충실성, 독창성 등 - 특화된 사업추진 및 운영마인드 	30점
		지역사회연계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계획 - 민관 상호협력 체계 	10점
		운영체의 공신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목표량 달성위한 의지,역량, 운영경험 - 센터를 운영할 책임 능력과 공신력 	10점
		예산 활용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우선순위 배정의 적정성 및 효율성 	10점
	합계			100점

※ 작성자 : 건강관리과 어르신건강팀 간호6급 민주희 (☎ 3423-6709)